

고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867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11. 14.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4. 11. 14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4. 11. 26. 산업경제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환경과장 최정란)

가. 제안이유

-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성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·대응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,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안 제2조)
- 2)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3)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4)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10조)
- 5)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- 6)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- 7)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)
- 8) 교육·훈련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~제15조)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7조의2
- 2)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3)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 -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40569(2024. 10. 18.)호]

조례안	수정안(검토의견)	검토결과
☐ 해당조항: 제6조(위원회의 구성)제1항 ⇒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☐ 해당조항: 제6조(위원회의 구성)제1항 ⇒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.	☐ 검토의견 미반영 ⇒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조례에 별도 명시하지 않아도 따라야 하는 사항이므로 미반영함.

4) 기 타

- 가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4-1518호
 - 예고기간: 2024. 9. 30. ~ 2024. 10. 21.(21일간)
 -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나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다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라) 신·구조문대비표: 해당사항 없음
- 마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불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조정제)

○ 제정 목적

-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,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검토 내용

- (안 제1조 ~ 제3조) 조례의 목적, 군수의 책무,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,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(안 제4조)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, 군수는 5년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시행계획 수립 포함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,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- (안 제5조 ~ 제10조)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·기능, 구성 및 운영, 간사, 의견 청취, 비밀 준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,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(안 제11조 ~ 제12조)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,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으로,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(안 제13조 ~ 제15조)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, 교육·훈련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,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서 규정한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고성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·대응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, 제정 목적 및 필요성,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4. 11. 26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